#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47

발의연월일: 2024. 10. 23.

찬 성 자:김한규·신정훈·박홍배

문대림 • 박희승 • 장철민

백혜런 • 진선미 • 민병덕

이건태 · 김태년 · 위성곤

강유정 · 김영환 · 박상혁

양부남 • 이재정 • 조 국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습지)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위하여 2024년 4월 제주에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를 개선하기 위한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

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이하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 사례 연구 및 지침 개발
- 2.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 3. 국제보호지역 보존 · 관리 정책의 개발에 관한 자문 및 지원
- 4.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에 관한 홍보
- 5. 국제보호지역의 보존 관리를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 6. 그 밖에 국제보호지역의 보존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

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보호지역 연구· 훈련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로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본다.

-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본다.
-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국제보호지역 연구·훈 련센터가 행한 행위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국제 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1조의3(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설
	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
	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
	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을 효율
	<u>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u>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이하 "국제보호
	지역 연구·훈련센터"라 한다)
	를 설립한다.
	②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
	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u>다.</u>
	1.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 사
	례 연구 및 지침 개발
	2.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3. 국제보호지역 보존・관리 정책

- 의 개발에 관한 자문 및 지원
  4.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에 관
  한 홍보
- 5.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 6. 그 밖에 국제보호지역의 보존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보호지역 연구· 훈련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